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9. 2. 26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공연장 대관차량 등의 주차료 책정에 따른 적용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 [안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(대관료, 강습료, 이용료)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 나목 (7)주차료]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(대관료, 강습료, 이용료) 종류 및 징수  
기준 제1호 나목중 (7)주차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(7)주차료

구 분		주 차 료
일 반 차 량		- 기본 30분 1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관람 차량		- 4시간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장 대관차량 (대관 기간중)	대극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
	소극장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
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		- 회원(일일회원 포함) 프로그램 이용 일 3시간 무료 (2개이상 프로그램 회원 4시간 무료) - 추가 10분당 500원
기타차량		-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 차량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 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 재확인” 차량 면제) - 10분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

※ 비교

1.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,000원으로 한다.
2.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.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경차 등 할인(면제) 대상차량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(면제)한다.
4.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5.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			수 정 안									
(7) 주차료				(7) 주차료									
구	분	주 차 료		구	분	주 차 료							
일	반	차	량	- 기본 30분 1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	일	반	차	량	- 원안과 같음				
공	연	관	람	차	량	- 4시간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	공	연	관	람	차	량	- 원안과 같음
공연장 대관차량	대	극	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	대	극	장	- 원안과 같음					
		소	극	장	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,000원 판매	소	극	장	- 원안과 같음			
문	화	체	육	- 회원(일일회원 포함) 프로그램 이용일 3시간 무료 (2개이상 프로그램 회원 5시간 무료) - 추가 10분당 500원	문	화	체	육	- 회원(일일회원 포함) 프로그램 이용일 3시간 무료 (2개이상 프로그램 회원 4시간 무료) - 추가 10분당 500원				
기	타	차	량	-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"주차확인"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"주차확인"에 한하여 1시간 면제 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"주차 재확인"차량 면제) - 10분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	기	타	차	량	- 원안과 같음				

  

※ 비고

1.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,000원으로 한다.
2.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.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경차 등 할인(면제) 대상차량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(면제)한다.
4.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5.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※ 비고

1. ~ 6. 원안과 같음